

거창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계획 보고

◆ 다세대, 다계층, 다연령의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거창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I 시설현황

- 시설명 : 거창국민체육센터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 스포츠파크내
- 개장일 : 2011. 3. 30
- 사업비 : 83억원(기공사비 60억원, 증축중 공사비 23억원)
-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시설규모 : 지하1층, 지상3층(건축면적/연면적 : 1,495㎡/3,591㎡)

구분	면적(㎡)	주요시설	비고
계	3,591.55	지하 1층, 지상3층	
지하	420.55	중앙제어실, 기계실, 전기실	
1층	1,484.25	수영장(성인풀 25m, 6레인, 어린이풀 18.5m, 2레인), 샤워실, 탈의실, 수영강사실, 안내실, 휴게실	
2층	621.75	사무실, 탁구장, 휴게실, 화장실	
3층	1,065.00	볼링장(10레인), 카운터, 화장실, 엘리베이터	공사중

※ 증축공사 공사기간 : 2014. 11. 26 ~ 2015. 9. 26

II 운영실태

- 운영형태 : 거창군 직접운영
- 종사인원 : 16명(직원4, 체육지도자강사7, 안내요원2, 환경관리3)
 - ※ 체육지도자강사 7명(수영6, 탁구1)
- 운영종목 : 수영, 탁구, 볼링(※ 운영예정 종목)

○ 이용자 현황

구 분	2012년(명)	2013년(명)	2014년(명)	2015년(명)	비 고
계	145,585	150,963	146,537	45,663	2015년 : 5월 까지 이용 인 원(4월휴관)
수 영	138,294	142,767	134,538	41,553	
탁 구	7,291	8,196	11,999	4,110	
1일평균	399명	414명	402명	304명	

○ 수입 및 지출 현황

구 분	2012년(천원)	2013년(천원)	2014년(천원)	2015년5월	비 고
수 입(A)	405,325	448,062	405,278	130,520	
지 출(B)	873,425	762,766	851,076	382,873	
증 감(A-B)	△468,100	△314,704	△445,798	△252,353	

※ 별첨<1> : 거창국민체육센터 연도별 수입 및 지출현황

○ 프로그램 운영

- 정규 프로그램 : 35개반/ 825명(1월 ~ 12월)
- 수영 : 24개반 685명(종합19반/ 555명, 실버1반/ 30명, 꿈나무4반/ 100명)
- 탁구 : 11개반 140명(평일7반/ 100명, 토요일4반/ 40명)
- 방학특강 운영 : 12개반/ 360명(초, 중학생, 여름 7월 ~ 8월, 겨울 12월 ~ 1월)

IV 유형별 장단점 및 소요예산

○ 유형별 장단점

구 분	위 탁 운 영	군 직 영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체험교실, 가족단위프로그램 개설)로 군민의 기대 및 욕구에 충족 ○ 직원 감축으로 인건비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시설·장비 유지 관리 ○ 공익성 추구 용이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 위주의 운영으로 서비스 질 저하 우려 ○ 시설물 운영관리에 따른 책임 감 결여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 부족으로 프로그램 운영 다양성이 결여 ○ 위탁운영 대비 운영비 등 증가 ○ 관리중심시설 운영으로 시설 이용도 저조

○ 유형별 소요예산

구 분		군 직영 (천원)	위탁운영 (천원)	비 교	
차 액(A-B)		△ 393,735	△ 226,400	절감167,325천 원	
수입 (A)	계	554,069	554,069		
	-수영·탁구장 수입	419,555	419,555	3년('12~'14)평균수입	
	-볼링장 수입	134,514	134,514	1일 60명(월25일) 기준	
지출 (B)	계	947,804	780,469		
	인건 비 및 후생 비	소 계	621,360	454,025	
		-공무원(4명)	228,435	0	2014년 공무원보수
		-매니저(1명)	0	30,000	민간위탁시 직원
		-행 정(1명)	0	26,400	민간위탁시 직원
		-강 사(7명)	204,750	204,750	수영 6명, 탁구 1명
		-환 경(3명)	64,575	64,575	청소 3명
		-안 내(3명)	64,575	64,575	1층 2명, 3층 1명
		-기 계(1명)	28,800	28,800	볼링1명
	-퇴직금	30,225	34,925	근로자(공무원제외)	
	관리 운영 비	소 계	326,444	326,444	
		-전기요금	70,993	70,993	3년평균+볼링(1200만원)
		-수도요금	30,776	30,776	3년평균+볼링(360만원)
		-통신요금	15,104	15,104	3년('12~'14)평균비용
		-재료구입	40,363	40,363	"
		-연료구입	54,983	54,983	"
		-수리관리	73,932	73,932	"
-사무실운영		20,415	20,415	"	
-기타		19,878	19,878	"	

※ 산출기초

- 수 입

- 수영+탁구장 운영수입 : 2012 ~ 2014년 평균수입의 평균
- 볼링장 예상수입 : 1일 60명(월25일)기준※함안군이용율(1일46명)참고

- 지 출

- 인건비 : (군직영) 2014년 체육운영담당 공무원보수, (위탁운영)국민생활체육회 책정 인건비, (볼링장)운영 인력확충 2명(기계1,안내1)
- 관리운영비 : 볼링장 운영의 전기(월100만원) 및 수요요금(30만원) 반영

※ 별첨<2> : 유형별 소요예산 산출 기초자료 1부

- 관리형태 변경 부서의견 : 거창국민체육센터를 군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시에는 167,325천원정도의 예산절감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육활성화가 기대되므로 민간위탁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V 위탁 운영

□ 관련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운영)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3조(관리위탁)

□ 위탁계획

- 위탁기간 : 3년(1회 한해 갱신(2년이내))
- 위탁자 선정
 - 공개모집 ⇒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사 ⇒ 위·수탁자 협약체결
- 위 탁 금 : 226,400천원정도
 - 입찰 가격·협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주소를 둔 기관, 단체, 비영리 법인 또는 개인
- 위탁사무
 - 거창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사항
 - 거창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 증축중인 볼링장 운영 포함
- 위탁조건
 - 현재 운영인력(12명 : 강사7, 안내2, 환경3) 수탁자 고용승계 및 볼링장 개장시 인력추가 고용(2명:기계1,안내1)
 - 거창국민체육센터 사용료(입장료)는 수탁자가 관리운영
 - 자산의 가치 및 내구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 또는 개보수 공사는 위탁자가 직접 시행하고, 수리 등 시설유지관리는 수탁자 부담
 - 시설 사용허가 및 이용료는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준수
 - 군 단위 이상 경기 및 연습 시 국민체육센터 우선 사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준수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별도의 계약서에 의한 위탁운영 계약 체결

VI 향후 추진일정(안)

구 분	기 간	비고
위탁운영 의회 동의요청/ 의결	2015. 6월 중순/ 7월 초순	
위탁운영 모집공고/ 접수	2015. 7월 중순/ 8월 초순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2015. 8월 초순/ 8월 중순	
협약체결/ 공증	2015. 8월 하순/ 8월 하순	
수탁자 운영	2015. 9월중	

VII 기타 사항

- 거창국민체육센터 근무 공무원 전보 : 위·수탁 완료시
- 국민체육센터 운영예산 : 제2회 추경 또는 예산 전용

VIII 기대효과

- 효율적인 시설물관리 통한 관리비(인건비, 유지비) 절감
- 시설 이용도 제고를 통한 이용자 저변확대
- 다계층, 다수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육활성화

※ 별첨<3> : 위탁관련 근거법규 발췌 1부

<별첨 : 1>

거창국민체육센터 연도별 수입 및 지출현황

○ 연도별 수입현황

【단위 : 천원】

월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고
합계	405,325	448,062	405,278	130,520	
1	38,293	34,561	24,192	32,244	
2	33,204	31,538	39,910	32,834	
3	35,202	32,519	38,010	33,957	
4	38,370	33,236	32,442	606	
5	29,132	28,956	27,380	30,879	
6	35,295	35,237	32,770		
7	37,436	37,854	40,875		
8	49,272	47,417	44,023		
9	44,016	44,520	24,456		
10	35,515	28,922	36,350		
11	26,886	29,484	31,366		
12	2,704	63,818	33,504		

○ 연도별 지출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고
합계	873,425	762,766	851,076	382,873	
공무원보수	219,796	219,351	228,435	103,436	
공공운영비	231,449	207,621	213,255	94,253	
사무관리비	48,538	38,536	26,602	12,291	
재료비	43,877	34,920	42,290	17,747	
여비	3,120	4,000	7,434	2,580	
자산취득비	7,4170	1,548	39,000	2,2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52,475	256,790	294,060	150,356	

○ 수입 및 지출 비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고
수입(A)	405,325	448,062	405,278	130,520	
지출(B)	873,425	762,766	851,076	382,873	
증감(A-B)	△ 468,100	△ 314,704	△ 445,798	△ 252,353	

<붙임 : 3>

위탁관련 근거 법규

지방자치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 2015.7.21.] [법률 제13017호, 2015.1.20., 일부개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0.2.4.>[전문개정 2008.12.26.]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2.26.]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5.1.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체육시설법)

[시행 2014.7.15.] [법률 제12248호, 2014.1.14., 타법개정]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4.05.28 조례 제2192호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

제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군수의 사무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 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 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개정2014.5.28)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2014.5.28)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 단체나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호이동2014.5.28)

② 심의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6.12)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 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제9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 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증? 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후단삭제 2014.5.28)

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무편람을 작성한다.(전문개정 2013.6.12)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제12조의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수탁기관에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할 때에는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내용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제 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9. 7. 15 조례 제1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6.12. 조례 제21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조례 시행 후 최초 위탁기간 만료 시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개정 2014.5.28 조례 제2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동의)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수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의 체결 등) ① 소관부서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협약의 체결, 협약내용의 공증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탁사항을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2013.08.14 조례 제2150호

제23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위탁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확보,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④ 제3항의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체육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03.25>

⑥ 군수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위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3조제4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정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한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4.21.] [대통령령 제26201호, 2015.4.20., 타법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